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38 - 184호

안 건 명 민원신고된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 6. 24.

주 문

1. 피심인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제공·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76,400,000원

나. 과 태 료 : 10,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포인트 카드 서비스 제공 ' 포인트카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매출액				
정보통신부문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9. 7. 15. ~ 17.)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보유 현황

3. 피심인은 그룹사에서 사용가능한 ‘ 포인트카드’앱(APP)과 포인트 카드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2019. 7. 31.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7. (유지보수 계약 해지) 2019. 5. 31., 피심인은 와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고 2019. 6. 1. 로부터 재위탁받아 유지보수 계약 업무를 처리하던 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와의 유지보수 계약 종료시점은 기존 와의 유지보수 계약만료 시점인 2020년 2월 29일까지임

3. 사실 관계

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행위

8. 피심인은 공연예매 서비스인 쉼을 2014. 6. 와 최초 계약하고 2019. 1. 23.부터 실제 운영하면서 에 개인정보(아이디, ' 포인트' 멤버십 고유번호) 처리를 위탁하였으나,

9. 피심인은 ' 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있었을 뿐, 상기 위탁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당시까지 이용자 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을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 으며, 현장조사 당일(2019. 7. 16.)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를 위탁업체 로 추가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10. 피심인은 등 8개 쇼핑몰과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 포인트카드' 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로 이동 시 아이 디와 ' 포인트' 멤버십 고유번호를 전송하고 있으나, 등 4개 쇼핑몰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전송 시 암호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 한 사실이 있다.



제휴업체명	구간 암호화 내역	제휴업체명	구간 암호화 내역
	HTTPS		없음
	HTTPS + 파라미터 암호화		없음
	HTTPS		없음
	HTTPS		없음

다.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동의 철회 방법을 어렵게 한 행위

11. 피심인은 2019. 7. 6. 기준 ‘포인트’ 앱(APP)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나, 앱을 통한 탈퇴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탈퇴가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포인트’ 앱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선택동의 항목에 대해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PUSH알림에 대해서만 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12.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11. 1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12. 4.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



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제1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제2호)'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13.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 업무에 대해 이용자와 계약한 주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부가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것은 그 성격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위탁업무의 경우에도 동의를 얻는 절차를 조치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 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14. 재위탁하는 경우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탁 업체가 본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다른 외부 업체에 재위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만약 본사가 이용자에게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재위탁을 허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 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업체가 수탁받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본사는 이에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수탁업체가 본사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재위탁함으로써 본사가 법률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 고시 제6조제3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제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제2호)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춘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7.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6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하며,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를 이용한 보안서버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

정보의 수집방법 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 동의철회를 하는 방법은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어려워서는 안 되며 더 쉬운 방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회방법이 수집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 더 쉬운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로는 접근매체 확대(전화, ARS, 이메일 등을 통한 철회도 가능하도록 조치), 철회 메뉴의 다양화(철회메뉴를 메인화면 외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나의 개인정보, 해당 서비스의 게시판 등에서 언제든지 쉽게 발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가입 절차는 쉽게 하면서도 탈퇴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19. 또한 동의철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하는 절차도 개인정보 수집절차보다 쉬워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동의철회나 열람·정정 방법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중 개인정보처리 위탁 동의}한 행위



20. 피심인이 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포인트 멤버십 고유
번호) 처리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위탁업체를 고지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21.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멤버쉽 고유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할 때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동의 철회 및 열람·제공·정정 방법을 어렵게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중 동의철회}

22. 피심인이 ‘포인트’ 앱(APP)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하고서도, 앱을 통해서는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의 열람·정정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웹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처리위탁동의	§25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행위
	암호화	§28①4호	§15④3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아니한 행위(고시§6③)
	동의 철회	§30⑥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보다 동의철회 방법을 어렵게 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제공·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23.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24.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위탁(제25조제1항)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5.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26.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3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중과실 여부

27.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이에 따를 때, 영리를 취할 목적이 없고 단순과실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29.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중대성은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31. 피심인의 정보통신부문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보통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을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 균
관련 매출액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32.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33.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34.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2. 과징금의 결정

36.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이나,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을 절사한 76,400,000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천원	필수적 가중 없음	추가적 가중 없음	7,640만원
	필수적 감경 (50%, 천원)	추가적 감경 (10%, 천원)	
	→ 천원	→ 천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VI. 과태료 부과

37.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제30조(개인정보의 파기)제6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3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러.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5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



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이에 따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30⑥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1,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41.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 위반행위에 대해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42.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5호(과징금) 및 제76조제1항(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4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4.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5.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표 철 수



위 원 허 욱



위 원 김 창 룡



위 원 안 형 환

